



경기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제도 변경 사항 안내

1. 관련

가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의6

나. 고용보험법 제118조, 시행령 제146조

다.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55호 「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」

라.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-2979(2022.7.14.)

2.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과 관련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 (사립학교·재단 포함)의 피보험자격신고(취득·상실), 월보수액통보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역별 특고센터 또는 공단 콜센터 (☎1588-00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도 변경 사항		
구 분	2022. 6. 30.이전	2022. 7. 1.이후
고용보험 요율(실업급여)	14/1,000	16/1,000
사업주(종사자) 부담분	각 0.7%	각 0.8%
공제율	18.4	23.5
과태료	면제	미신고 1명당 3만원(최대100만원) 거짓신고 1명당 5~8만원(최대300만원)

□ (유의사항) 2022.7.1.이후 발생하는 월보수부터 변경된 요율·공제율이 적용되며, 2022.6.30.이전으로 소급 또는 변경 신고 하는 경우 종전 요율 및 공제율 적용

(예, 2022.6월 월보수액통보는 7.30.신고 기한이므로 기존 요율·공제율 적용)

※ 과태료 부과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

붙임 특고 센터별 연락처 1부. 끝.

경기도교육감



수신자 교육지원청, 초, 중, 고

★장학사

이희진

장학관

이문구

과장

2022.07.18.

제평섭

협조자

시행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-6666 (2022. 7. 18.) 접수 학교행정지원과-4024 (2022. 7. 18.)

우 1627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(금오동, 경기도교육청북부 청사) / http://www.goe.go.kr

전화 031-820-0686

/전송

/coolin2@korea.kr

/공개

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.